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6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	---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4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10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15
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정부안 등)	20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등	26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정부안등) ..	41
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	

안 등)	46
8.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선교 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60
9.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 원안, 박성훈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 정부안)	66
10.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영세율 추정사유 확대(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 원안, 김영진의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12789, 12819), 정희용 의원안, 정부안)	80
1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92
12.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100
1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105
14.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111

15.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및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박용 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117
16.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 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26
17. 전기 및 수소 이용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36
18.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 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45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10.

(3) 회 부 일 : 2025. 3. 11.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9조의3).
-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 특례: 창업기업, 벤처기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 ○ 출자방식: ①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등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 출자방법: -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한도: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출자방식: (현행과 같음) ○ 출자방법: - 안도걸의원안: <u>7년</u> → <u>10년</u>으로 완화

현 행	개정안
* 코넥스상장기업일 경우 7년 이내 → 2년 이내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2030. 12. 31. (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2))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이인선의의원안 2025. 1. 31. 발의(의안번호 7850),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회사 등이¹⁾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직접 또는 벤처펀드²⁾를 통해 투자하여 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출자자	방식	대상	법인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직접	①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⑤ 코넥스상장기업	○	○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신기술사업자, ⑤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직접	②, ③, ④, ⑤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기금운용법인등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X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간접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①, ②, ③, ④		

□ 동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해왔음.

한편,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출자대상에 추가하였고,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³⁾이 벤처투

다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3) 참고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 특례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동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16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까지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	27	16	15	64	24	41	120	205	65	120	123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벤처투자규모가 2024년 들어 처음으로 반등한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는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의 개선이 기대되고, 벤처기업 등의 특성상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

도가 없어 소수 유망기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⁴⁾

둘째, 안도결의원안과 같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된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2) ○ 대상 -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원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u> - <u>2035년 12월 31일(문대림의원안)</u>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제8766호), 문대림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제8931호),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제9021호), 이원택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제9067호), 이만희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제9313호),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제9340호),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제12108호),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제12154호), 임호선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제12620호),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제12789호), 윤영석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제12810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12건의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말(2년 연장)로, 이원택의원안·추경호의원안·윤영석의원안과 정부안은 2028년 말(3년 연장)로, 김선교의원안은 2029년 말(4년 연장)로, 윤준병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은 2030년 말(5년 연장)로, 문대림의원안은 2035년 말(10년 연장)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⁵⁾.

2024년 동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액은 124억원이며, 2026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73억원임.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액	85	114	124	67	73

*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참고로, 2025년 3월 1일 기준 축산농가 수는 94,637가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이후 10만 가구를 하회하는 수준임.

[주요 축종별 사육가구 수]

(단위: 가구)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1. 기준)
한·육우	91,592	87,145	81,941	80,555
젖소	5,888	5,553	5,392	5,379
돼지	5,695	5,634	5,513	5,602
닭	2,694	2,815	2,687	2,747
오리	338	370	411	354
합계	106,207	101,517	95,944	94,637

* 자료: 「2025년 1/4분기(3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2025.4.25.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에 축산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도 포함되었고, IMF 이후 구조조정 지원 및 농어업인 지원 강화 목적으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 이후 주기적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음.

미국, 호주 등과의 연이은 FTA 체결 후 축산물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축산농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폐업농가의 인수, 합병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동 조세특례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⁶⁾ 및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⁷⁾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⁸⁾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

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8) “자경농지 감면과 달리 축사용지는 산업구조 및 환경규제에 따라 정책효과가 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상시 감면보다는 한시 감면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회 예산정책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2022년)

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 대상 -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박성훈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u>2035년 12월 31일(신영대의원안)</u>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신영대의원안 2025. 4. 30. 발의(의안번호 10254),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7건의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말(2년 연장)로, 이병진의원안·추경호의원안과 정부안은 2028년 말(3년 연장)로,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말(4년 연장)로,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말(5년 연장)로, 신영대의원안은 2035년 말(10년 연장)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⁹⁾에서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¹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¹¹⁾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4년 24억원이고, 20245은 약 11억원, 2026년은 약 1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4	25	24	11	12

*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참고로, 2024년 양식어업가구는 1만 1,276호로 2019년 대비 80.3%, 2024년 양식어가인구는 2만 5,024명으로 2019년 대비 71.2%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9-2024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어업가구 (호)	50,909	43,149	43,327	42,536	41,775	40,890
어가인구 (명)	113,898	97,062	93,798	90,805	87,115	83,963
양식어업가구(호)	15,292	10,335	11,228	11,174	10,938	11,276
양식어가인구(명)	35,136	25,205	26,456	25,829	24,337	25,024

*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중 「어업형태별 어가, 어가인구」)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육상 양식어업인이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지원과 농업인과의 형평성 제고,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또한, 어업용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필요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와는 달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¹²⁾ 및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¹³⁾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통상 2년에서 3년의 일몰 규정을 두어 적용기한을 한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한시적 지원을 통해 조세특례의 남용을 막고, 정책효과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어업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변화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

2018년 1월 1일부터(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동 조세특례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2~3년 단위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특

1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정부안 등)

현 행	개정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 ○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어선·어업권·축사용지 등을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만희·주철현·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문대림·서천호·, 윤준병·유상범·임호선 의원안)
☐ 감면 한도(제133조) ○ 5년간 감면 한도: - 1억원	☐ 감면 한도 확대 ○ 5년간 감면 한도: - 2억원(문대림의원안) - 5억원(이만희의원안)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문대림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4)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0), 이만희의원안 2025. 3. 26. 발의(의안번호 9356)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임호선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2),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동 증여세의 감면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1년 연장하는 안(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

는 안(이만희·주철현·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김선교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문대림·서천호·윤준병·유상범·임호선 의원안)이 제시되었음.

감면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5년간 합산 '1억원'의 감면한도를 문대림의원안은 '2억원'으로, 이만희의원안은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 동 특례제도는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이전 하도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¹⁴⁾에서는 자경농민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등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초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5년간 증여세액 합계 기준)을 한도로¹⁵⁾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동 특례제도가 적용된 감면세액은 2021년도 773억원, 2024년도 476

1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억원의 실적치를 기록하였고, 2026년도에는 543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모]

(단위: 억 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773	712	654	476	506	54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조세감면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 농·어민 이익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으로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¹⁶⁾의 경우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세제의 기본 공제제도로써 계속 운영되고 있음.

둘째,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 원칙 유지 측면에서 증여세 감면 혜택의 계속 적용을 통해 농어업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년 어가 경영주 또한 70세 이상이 1만 7천 가구(전체 어가의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만 5천 가구(37.2%), 50대는 6천 가구(13.8%)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7.4%)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40.9 (100.0)	0.4 (1.0)	2.5 (6.1)	5.7 (13.8)	15.2 (37.2)	17.1 (41.9)
증 감	-0.9	-0.1	-0.2	-0.7	-1.1	1.2
증감률	-2.1	-25.0	-6.7	-10.7	-6.7	7.4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셋째, 사후 상속시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을 일정 맞추어 젊은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현재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¹⁷⁾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일몰기한을 정하지 않은 영구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억원으로 증여보다 유리점이 커 상속 시까지 농지 등의 이전을 이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넷째, 2006년 12월 31일 해당 감면한도 규정 신설 시 1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 감면한도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감면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물가를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는 78.01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로서 그간의 물가상승분에 따른 한도액의 실질가치 하락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4
소비자물가지수	78.010	86.373	94.861	100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첫째, 감면한도의 상향은 기존 감면실적과 평균 감면액 등 고려 시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490명의 수증자 중 53%(13,097명)는 1,000만원 미만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억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비중은 4.49%(1,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둘째, 적용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영농·영어가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젊은 후계자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와 같이 영구적 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가. 개요

□ 현행법 제72조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임.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를 위하여 복잡한 세무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과세표준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음.¹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선택한 조합법인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합법인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대부분의 공공법인을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 편입시키고,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동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8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운영
1999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율: 12%
2001	·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세무조정 신설
2009	· 세율 인하: 12% → 9%
2013	· 세무조정 대상 확대: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 경비 + 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5	· 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12%
2016	· 2016년까지 합병 시 신설(존속)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2018	· 적용기한 3년 연장(2020년 말까지)
2021	· 적용기한 2년 연장(2022년 말까지)
2023	· 적용기한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따라 2024년에는 총 3,173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2,731억원, 2026년에는 2,791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5,113	3,173	2,731	2,79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운영석의원안, 정부안)

현 행	운영석의원안	정부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서 기부금, 업무추진비 등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u>20억원</u> 이하: 9% - 과세표준 <u>20억원</u> 초과: <u>12%</u>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u>12%</u> ○ 적용기한:	□ 저율과세 구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율 - 과세표준 <u>30억원</u> 이하: 9% - 과세표준 <u>30억원</u>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 적용세율 인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u>15%</u>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u>15%</u> ○ 적용기한:

현 행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u>2025. 12. 31.</u>	<u>2028. 12. 31.</u> ○ 시 행 일: 2026. 1. 1.	<u>2028. 12. 31.</u> ○ 시 행 일: 2026. 1. 1. ○ 경 과 조 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법인세 세율에 관 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윤영석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6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과표구간 또는 세율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

윤영석의원안은 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려는 것임.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세율 비교]

일반법인		조합법인		조합법인 우대 폭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억원 이하	9%	2억원 이하	-
2억원 ~ 200억원	19%			2억원 ~ 200억원	7~10%p
200억원 ~ 3,000억원	21%			200억원 ~ 3,000억원	10%p
3,000억원 초과	24%	20억원 초과	12%	3,000억원 초과	13%p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개정안별 비교]

현행법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억원 이하	9%	20억원 이하	9%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u>12%</u>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u>9%</u>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u>15%</u>
30억원 초과	<u>12%</u>	30억원 초과	12%	30억원 초과	<u>15%</u>

□ 먼저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영세 조합법인의 고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협은 도농상생기금¹⁹⁾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영농도우미 지원 등 농촌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수협은 어촌마을 의료봉사, 어업인 장학금 지급 등 해양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수행 중임.

또한, 새마을금고 역시 지역아동센터 후원 등 지역밀착형 복지에 기여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임도사업²⁰⁾, 사방사업²¹⁾ 등 산림재해 예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협 역시 사회적·금융적 취약계층에게 금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민 환원사업 수행, 지역사회 의 자생력 및 복지 향상 기여 등과 같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리법인보다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19) 도시 농·축협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98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7,910억원을 지원하였음.

20) 임도는 산림보호, 산림사업의 효율성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 내에 시설하는 도로로써 산림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임. 산림조합은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시설함으로써 산림의 집약적·효율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시설된 임도 중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곳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작업을 통해 견고한 임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임.

21) 사방사업은 붕괴지, 붕괴 우려지에 대한 지반 안정작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집중호우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임.

□ 다만,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조합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의무 완화와 더불어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현행 제도 하에서도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의 실효세율은 8.3% 수준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인 12.5%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형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형 조합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 최고세율(24%)의 절반인 12%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제혜택의 규모가 크고, 2023년 기준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경우 실효세율이 8.7%이지만,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8.3%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²²⁾

22)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익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23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산림 조합	생협 조합	기타
전체	8.8	9.3	9.3	8.2	8.8	9.0	8.5	8.9
0~20억원 이하	8.7	9.0	-	8.5	8.5	-	9.0	8.9
20~100억원 이하	8.3	8.9	-	8.0	8.6	9.0	8.0	8.3
100억원 초과	9.3	9.3	9.3	8.6	9.7	9.0	9.0	9.3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동 조세특례에 대한 2025년 심층평가²³⁾에 따르면,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여 규모가 큰 조합일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괴리가 있으므로 일정 자산 또는 이익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조합에 대해 특례 적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여 역진적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둘째, 최근 동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5,113	3,173	2,731	2,79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동 조세특례의 지출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2023년 조세지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2022년 기준금리 인상²⁴⁾에 따라 여신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인하여 2023년 신고분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새마을금고의 PF대출 등 고위험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²⁵⁾

동 조세특례의 취지가 영리법인에 비해 조직화 수준이 낮고 규모가 영세한 조합법인에게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면제하고 일반 세율 대비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되 수익성이 큰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규모를 일부 축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동 조세특례에 대한 2025년 심층평가²⁶⁾에 따르면 효과성 분석 결과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높여도 세수저항이 크지 않았고, 수익성 및 성장성 하락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조세특례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조합법인의 매출지표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할 경우 앞서 제시한 조합법인의 공익사업과 고유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24) 기준금리(%): ('22. 1.) 1.25 ('22. 4.) 1.50 ('22. 5.) 1.75 ('22. 7.) 2.25 ('22. 8.) 2.50 ('22. 10.) 3.00 ('22. 11.) 3.25

25)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 (귀속연도 기준): ('21년) 1조 1,152억원 ('22년) 1조 5,573억원 ('23년) 860억원

26)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 조합을 정리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병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조합간 합병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²⁷⁾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 시 정책적 지원을 받아 합병한 조합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책 간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7) 합병에 따른 농축협 수 감소 현황(출처: 농협중앙회): ('61년) 21,042개 → ('68년) 16,089개 → ('73년) 1,549개 → ('88년) 1,463개 → ('99년) 1,132개 → ('10년) 1,171개 → ('17년) 1,131개 → ('24년) 1,111개

다. 적용기한 연장(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박희승의원안,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임이자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업무추진비 등을 세무조정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서영교의원안)</u> <u>2028. 12. 31.(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u>

현 행	개정안
	<u>의원안, 정부안, 임이자의원안</u> <u>2029. 12. 31.(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u> <u>2030. 12. 31.(서삼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정희용의원안)</u> <u>2031. 12. 31.(서천호의원안)</u> <u>2035. 12. 31.(문대림의원안)</u> ○ 시행일: 공포한 날(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김선교의원안) 2026. 1. 1.(주철현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박희승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임이자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4. 12. 2. 발의(의안번호 6093),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문대림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8975),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이양수의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73),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7.(의안번호 11114), 박희승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39), 송옥주의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신영대의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84),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윤영석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62),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천호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52), 정희용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09),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임이자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1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서영교의원안), 3년(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임이자의원안), 4년(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5년(서삼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정희용의원안), 6년(서천호의원안) 또는 10년(문대림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영세한 개별 조합법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둘째, 국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법인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동 특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단계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을 통해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²⁸⁾ 2020년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²⁹⁾.

28)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p. 7-8

29)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p. 12-14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조합원의 실익 증가나 공익 기여로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사항 추가, 대형조합 세율 인상, 공익활동 실적 등 공제요건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³⁰⁾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0)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p.9, p126-127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정부안등)

현행	개정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 ☐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 ☐ 내용: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 적용기한: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내용: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7년 12월 31일: 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 주철현·이만희·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 엄태영·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서천호·송석준·유상범·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u> - <u>2035년 12월 31일: 문대림의원안</u>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10. 발의(의안번호 8766) 문대림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31), 이만희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8973)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송석준의원안 2025. 4. 1. 발의(의안번호 9522) 엄태영의원안 2025. 6. 23. 발의(의안번호 11013),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4. 발의(의안번호 12681),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정희용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09),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주철현·이만희·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엄태영·김선교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서천호·송석준·유상

범·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 10년 연장하는 안(문대림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도입되었으며,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³¹⁾로 함.

만기 시 저축금액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 외에 만기 시 ① 일반 농어민에 대하여는 평균잔액의 2.7%(3년납), 7.5%(5년납)의 저축장려금을, ② 저소득농어민에 대하여는 일반 농어민의 저축장려금에 6.3%(3년납), 16.5%(5년납)을 가산하여 지급³²⁾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²³³⁾에 따라 소득세·증여세 및

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3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상품의 특성상 오랜기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는데, 2011년 이후에만 5차례 적용기한이 연장³⁴⁾되었음.

2025년 8월 기준 가입자 수는 20만명, 납입액은 1조원 규모이며, 동 비과세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5억원, 2024년 63억원으로 향후 4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단위: 좌 수,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208,885
납입액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11,129

자료: 금융위원회

[연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5	37	43	63	42	4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저축장려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해당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되는데³⁵⁾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4) 2011년 이후에만 5차례(2011. 12. 31. → 2014. 12. 31.까지 → 2017. 12. 31.까지 → 2020. 12. 31.까지 → 2022. 12. 31.까지 → 2025. 12. 31.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3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총 3천억원 규모임.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액]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
정부 출연액	339	341	266	270	315	241
한국은행 출연액	339	341	266	270	315	220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농어업 분야는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장 개방, 이상 기후 및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농어민의 수입은 기후, 계절, 시장수요 및 공급 등에 따라 불규칙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장려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1976년 도입된 이래 오랜 기간 농어민의 주요 저축수단이 되어왔고, 농어가 가구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할 때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차원에서도 세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제지원의 유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으로 조사³⁶⁾된 바 있고,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으로,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사³⁷⁾되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동 과세특례는 정부 예산 출연을 통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에 더하여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저소득 농어민이 아닌 일반 농어민에게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형평과 장기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36)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37)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 등)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제89조의3) ○ 대상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이자·배당소득 ○ 한도 - 출자금: 1명당 2,000만원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 출자금: (현행과 같음)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5,000만원(윤영석의원안) ① 의원발의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분리과세 기간도 순차적으로 연장) ○ 출자금 - 2027년 12월 31일: 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주철현·김영진·이양수·이병진·송옥주·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박성훈·김선교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임오경·서삼석·박희승·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서천호의원안 - 2032년 12월 31일: 조인철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신영대의원안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행	개 정 안																
	○ 예탁금 - 2027년 12월 31일: 김주영·서영교 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주철현·김영진·이양수·이병진·송옥주·추경호·최은석·윤영석·임이자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박성훈·김선교 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임오경·윤준병·서삼석·박희승·박상웅·임호선·정희용 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서천호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신영대의원안																
	② 정부안: 가입자 요건에 따라, 조합원, 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그 밖의 가입자는 저율 분리과세 -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저소득자(2024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8.12.31. 까지</th><th>'29.1.1. ~ '29.12.31.</th><th>'30.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 그 밖의 가입자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5.12.31. 까지</th><th>'26.1.1. ~ '26.12.31.</th><th>'27.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제91조의24) ○ 대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 특례 적용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정부안) ○ 대상: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추가																

현행	개정안
○ 기준연도 특례: - 원칙: <u>가입(연장) 신청일</u>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 예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간주	○ 기준연도 특례: - 원칙: <u>가입(연장) 신청일 출자일</u>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 예외: (현행과 같음)

* 이만희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35), 이만희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번호 6138)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임오경의원안 2025. 2. 4. 발의(의안번호 7902)
임오경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03), 김영진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5)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조인철의원안 2025. 4. 14. 발의(의안번호 9783), 신영대의원안 2025. 4. 30. 발의(의안번호 10254)
이양수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73),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박희승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39)
김주영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16),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윤영석의원안 2025. 8. 27. 발의(의안번호 12437)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4. 발의(의안번호 12681)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천호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52)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정희용의원안 2025. 9. 29. 발의(의안번호 13341)
임이자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10)

□ 개정안 등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조합 등³⁸⁾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

① 다수 의원발의안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단순 연장(2년에서 10년까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단, 윤영석의원안은 예탁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38)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② 정부안은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입자(2024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농·어·임업인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2026년에는 5%의 세율로, 2027년 이후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이자·배당의 발생시기’ 별로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득기준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조합 등이 가입(출자)시 소득기준 요건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가입일과 출자일’로 변경하면서 소득요건에 관한 기준 연도 특례규정³⁹⁾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⁴⁰⁾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3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4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현재 조합원등에 대하여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는 5%로 분리과세되고, 2027년 이후에는 9%로 분리과세 됨.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근거조항	적용기간	특례내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2007. 1. 1 ~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연장되었음.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11차례 연장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200만원에서 1987년 500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주요 연혁]

시 기	내 용
1976 ~ 1977년	· 예탁금 100만원,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1978 ~ 1986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100만원 → 500만원
1987 ~ 1988년	·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및 이용고배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예탁금 : 500만원 → 1,000만원 - 출자금 : 200만원 → 500만원
1989년 이후	·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1992 ~ 1994년	· 비과세 한도 인상 : - 예탁금 : 1,000만원 → 2,000만원 - 출자금 : 500만원 → 1,000만원
2009 ~ 2012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2024년 이후	· 출자금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납입한도 증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납입한도 상향으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조 359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6년에는 1조 1,48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19년	11,932,600	-	564,175	-	273,591	-	5,233,827	-	7,462,967	-
'20년	12,692,288	6.37	593,049	5.12	311,860	13.98	5,920,854	13.13	8,366,135	12.1
'21년	13,618,962	7.30	637,003	7.41	360,607	15.63	6,561,631	10.82	9,599,412	14.7
'22년	14,220,952	4.40	673,672	5.76	397,170	10.14	6,770,079	3.18	9,837,449	2.50
'23년	14,503,038	2.00	708,519	5.17	432,643	8.93	6,463,591	△4.53	9,248,811	△6.00
'24년	15,167,014	4.60	729,962	3.03	470,086	8.65	6,621,311	2.44	9,832,390	6.3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년	56,525,781	-	6,682,477	-	1,698,445	-	29,375,497	-	47,839,104	-
'20년	53,491,025	△5.4	6,204,701	△7.2	1,737,220	2.3	28,964,829	△1.4	46,848,210	△2.1
'21년	49,639,937	△7.2	6,351,680	2.4	1,773,703	2.1	29,139,459	0.6	47,899,564	2.2
'22년	57,413,110	15.7	7,976,482	25.6	2,135,860	20.4	33,409,369	14.6	57,672,907	20.4
'23년	62,112,233	8.2	8,254,928	3.5	2,353,041	10.2	34,174,623	2.3	57,865,172	0.3
'24년	63,110,017	1.6	8,200,585	△0.7	2,418,508	2.78	33,960,955	△0.6	56,394,950	△2.5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0,359	10,680	11,48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연장, 한도금액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 중 농어민 등은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국제 분쟁과 같은 외생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고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이 있음⁴¹⁾.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으로 조사⁴²⁾된 바 있고,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으로,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사⁴³⁾되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상호금융의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금융 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디지털 전환 확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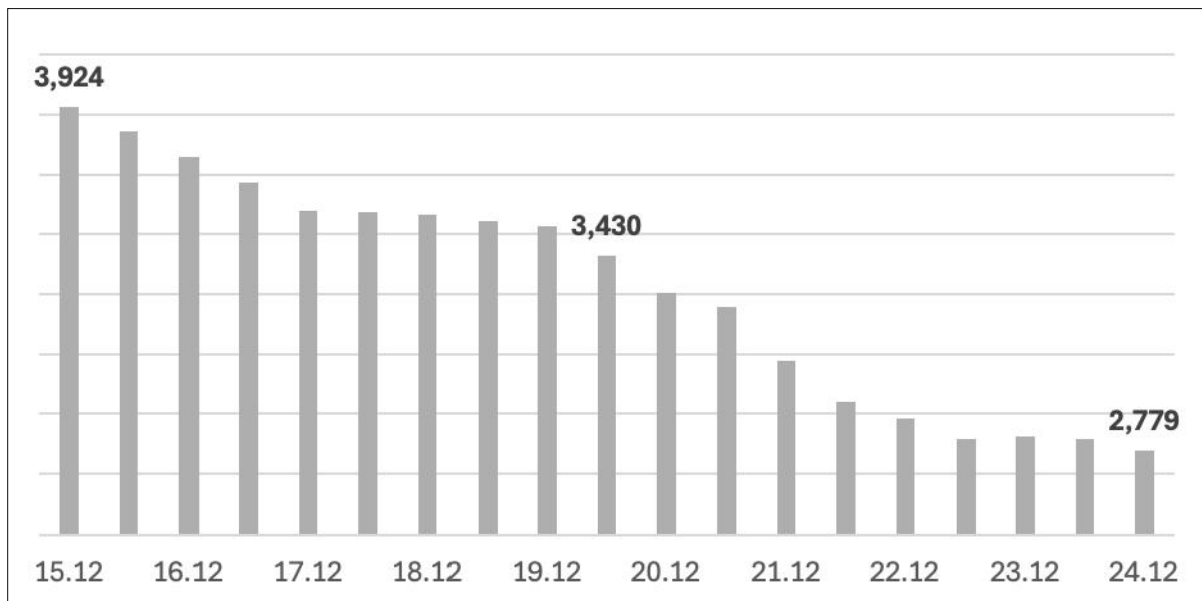
41)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0) 81p..

42)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43)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함께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은 오히려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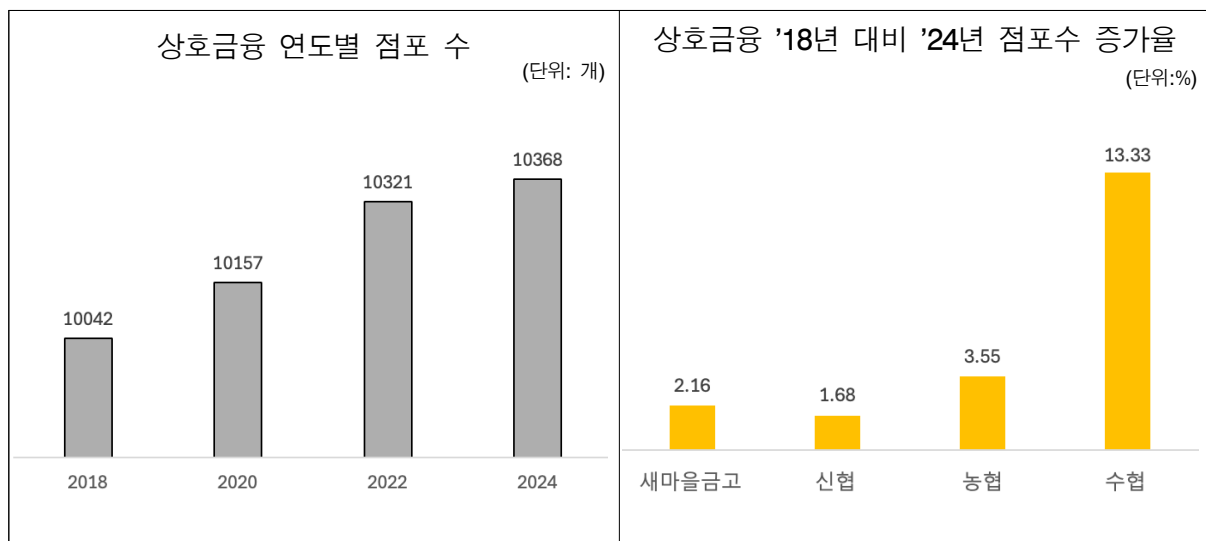
[제1금융권 4대 은행 점포 수 합계 추이]



주: 제1금융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합계를 의미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 점포수 현황]



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상호금융 고려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관련 연구⁴⁴⁾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점포망을 통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한 관계금융을 실현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임.

셋째, 이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이 수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상호금융은 신탁, 퇴직연금, ISA 등 취급상품의 제한⁴⁵⁾ 등으로 제1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우량 조합원 등의 자금

44) 여효성·김봉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은경(2018). “미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질서경제저널』, 21(1):65-92.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83p. 재인용

45) 상호금융(단위조합 기준) 취급상품 제한

구 분	취급 근거법률	제한 사유
신탁, 퇴직연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 자본시장법	유사 신탁업자(은행, 증권회사 등)만 취급 허용
양도성예금증서	한국은행법, 금융위규정	한은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미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은행법, 금융위 결정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 가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국공채 창구판매	국채법, 기재부규정	은행, 증권회사만 취급 허용
외국환	외국환거래법	환전 등 일부업무 제한적 취급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업자에 미포함
주택신용보증서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 미체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취급 허용

자료: 농협중앙회

이탈을 유발하여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조합원 등이 추가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임업인과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유지하되, 농·어·임업인이 아니면서 일정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종료하고, 예정대로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정부안은 농·어·임업인,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고액소득자를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확보할 수 있음.

농·어·임업인, 영세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지역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거주자가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쉽게 조합원(회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한 상황임.

[상호금융기관 가입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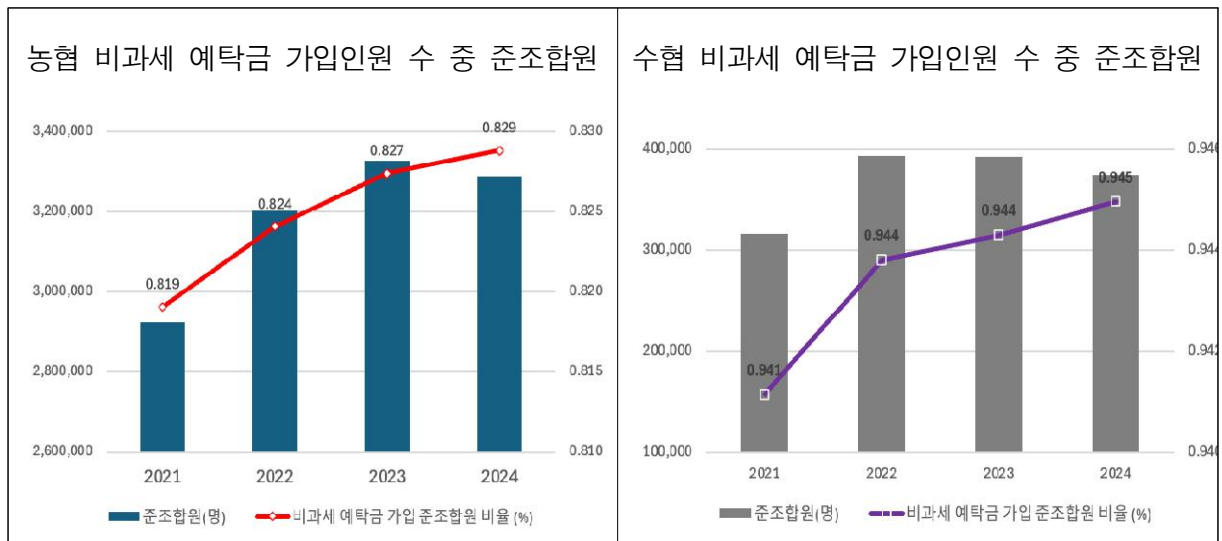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지역 농업인	지역 어업인	지역 임업인	지역거주자 등	지역거주자 등
준조합원	지역거주자 등	제한 없음	지역거주자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의 운용 결과는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 조합 등 활동과 무관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직장형 새마을 금고를 중심으로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고배당, 고금리,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구성은 지역기반의 조합원보다 일반 금융소비자, 특히 준조합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⁴⁶⁾으로 확인된다는 것임.

[농협 및 수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중 준조합원 비율]



출처: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감면액은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구조로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

46) 조합원/준조합원 별 비과세 대상 예탁금 현황('24년말 기준, 출처 : 각 기관)

- 농협 : 조합원(11.6조원, 18.4%), 준조합원(51.4조원, 81.6%)
- 수협 : 조합원(1.0조원, 5.0%), 준조합원(19.0조원,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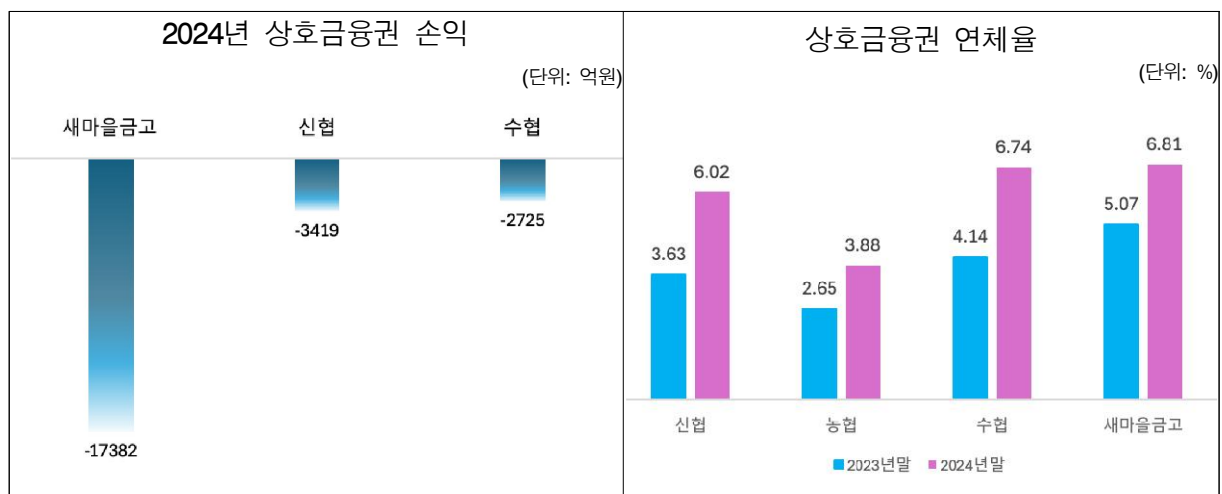
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이러한 사유로,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서는 ① 수혜 자격에 일정한 소득요건을 도입하거나 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질적 필요계층에 한정한 지원하는 방안 혹은 ② 일몰계획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만,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의 비과세혜택 축소로 인한 자금이탈이 자칫 상호금융기관의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상호금융권 손익 및 연체율]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문 의 처
02)6788-5161

8.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선교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4) ○ 대상 -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건설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 ① 기회발전특구,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 등이 아님·읍·면, ③ 인구 20만 이하 시(市)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④ 취득당시 주택·토지가격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고향주택 · ① 고향소재, ②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외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③ 취득당시 주택·토지가격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u>적용기한</u> - <u>2025년 12월 31일</u>	□ <u>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u>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 연장</u> - <u>2027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원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이만희의원안, 김선교의원안)</u>

현 행	개정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서천호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임호선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제8766호), 이원택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제8981호),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제9021호), 이만희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제9189호),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제9340호), 김형동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제11203호), 엄태영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제12167호),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제12620호), 윤영석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제12782호),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제12789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11건의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엄태영의원안·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말(2년 연장)로, 이원택의원안·윤영석의원안과 정부안은 2028년 말(3년 연장)로, 이만희의원안·김선교의원안은 2029년 말(4년 연장)로, 윤준병의원안·서천호의원안·김형동의원안·임호선의원안은 2030년 말(5년 연장)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⁴⁷⁾에서는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

4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가이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

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전제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과세특례의 대상인 농어촌주택은 ①기회발전특구, ②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 등이 아닌 읍·면, ③인구 20만 이하 시(市)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④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고향주택은 ①「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⁴⁸⁾인 지역이면서 ②일정 인구(20만)이하인 시 지역에 소재(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등 제외), ③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8)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 포함)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및 10년 이상 거주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 (고향주택 소재 지역범위) 에 구체적 지역이 열거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

구분	시 (26개)
충청북도(1)	제천시
충청남도(6)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4)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3)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2)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3)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1)	서귀포시

*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동 조세특례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 및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후 주기적으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음.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어·귀촌 가구수는 31만 7,464가구로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귀농·귀어·귀촌 가구⁴⁹⁾ 수]

(단위: 가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귀농가구	12,489	14,347	12,411	10,307
귀어가구	897	1,135	951	716
귀촌가구	345,205	363,397	318,769	306,441
합계	358,591	378,879	332,131	317,464

* 자료: 「귀농·귀촌인통계」, 통계청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동 조세특례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목적이 있음.

귀농·귀촌을 희망하여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따른 경제적 부담(농지취득·농업경영자급 확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별로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

49) ※ 귀농·귀어·귀촌인 :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어인)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촌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 제외

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동 과세특례의 세수감소 효과는 신고서에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감면세액을 기재하지 않아 별도 세액 추정이 어려움.⁵⁰⁾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50)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81)

9.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 공제대상: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u>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u>	☐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요건: (현행과 같음)	☐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요건: -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u>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30% 이상이거나 해상운송 물동량(TEU)이 전체 해상운송 물동량의 30% 이상일 것</u>	☐ 공제요건 변경 (운송비용→물동량)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요건: -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u>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40% 이상일 것</u>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 공제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운송비용의 3% <신 설>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적용기한: 2025. 12. 31.	○ 공제액: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이병진의원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삭 제> ○ 공제액: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삭 제> ○ 기본공제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추가공제액: (요건) 전체 원양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이 25% 이상 (추가공제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 시행일: 2026. 1. 1.(이병진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박성훈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403),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박성훈의원안은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하한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함과 동시에 해상운송물동량 비율 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지출비용 비율 증가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현행 운송비용 기준 공제요건을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공제금액 산출방식을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와 원양노선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존 공제요건을 삭제하고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40% 이상인 경우”에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만큼 기본공제를 적용하되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원양 해상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만큼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04조의30은 「해운법」 제47조의2⁵¹⁾에 따라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 컨테이너 선사)⁵²⁾를 통하여 해상운송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비율이 ① 40% 이상이고, ②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1%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51)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52) 「해운법」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2. 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3%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세액공제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신설에 따라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8월에 신설되었고, 2025년 9월 기준 35개사(화주기업 22개사, 선주기업 13개사)가 인증되었음.

[우수 선화주기업 중 화주 기업 인증기준]

구 분	세부 심사항목
동반성장 노력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의 지속성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장기계약 체결 비중
	최소약정물량 준수

자료: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우수선화주 인증 화주기업(2025년 9월 기준)]

인증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증기업 수	3개사	12개사	15개사	5개사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 동 제도의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 이후 2021년 7억원, 2022년 36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기업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0	0	0	0	0	0
법인세	7	36	24	8	0.9	2
합계	7	36	24	8	0.9	2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가. 적용기한 연장

- 먼저 동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국적선사 지원을 통하여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017년 세계점유율 7위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매출액과 선복량 등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국내 최대규모 해운기업인 HMM의 2025년도 상반기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⁵³⁾,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아시아 역외 원양노선 적취율⁵⁴⁾ 역시 2016년 30.3%에서 2017년 15.4%로 급감한 이후 일부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아시아 역외 원양노선 적취율은 2024년 기준 22.1%로 아직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최근 미국의 보호관세 정책 등에 따라 해상운임이 크게 하락하는 등 여러 위험이 상존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53) HMM의 2025년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4,7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조 2,111억원으로 5.7%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5.5%로 글로벌 선사 중 상위권을 기록함.

54) 국내 화주가 국적 선사에 화물을 맡기는 비율

[국적 컨테이너 선사 적취율]

(단위: %)

구분	총적취율	아시아 역내				아시아 역외			
		전체	한일	한중	한동남아	전체	북미	유럽	기타
2016	49.1	60.0	75.3	52.7	64.2	30.3	36.5	30.5	24.5
2017	42.8	58.9	74.6	50.7	63.8	15.4	27.2	9.5	10.6
2018	44.4	60.1	74.0	52.5	64.8	17.0	31.7	9.2	10.8
2019	45.3	60.4	75.0	53.0	65.3	18.6	32.7	11.2	10.8
2020	46.1	60.0	74.1	52.5	65.8	19.4	33.7	11.4	10.7
2021	46.2	59.7	74.0	52.4	65.2	20.4	34.5	13.1	11.2
2022	45.9	58.8	79.5	50.5	64.3	21.0	29.4	18.3	13.0
2023	45.5	58.9	77.8	50.5	65.5	20.2	30.2	15.5	11.8
2024	44.9	56.3	77.1	49.5	60.9	22.1	30.2	18.3	14.0

주: 물동량(TEU)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국내화주가 외국 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만큼 외화가 유출되어 경상수지의 감소를 초래하여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 국적선사의 경우 국내 기항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유사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평시에 국적선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동 특례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로 201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2025년 들어 해상운송 운임이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업황, 운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833	811	1,265	3,792	3,410	1,006	2,460	1,479

주: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거래소에서 2005년부터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spot)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로 20ft 컨테이너(TEU)당 미달러(USD)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임에 기초하여 산정함.

자료: 해양수산부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나.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산출방식 변경

□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비율이 ① 40% 이상이고, ②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1%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3%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박성훈의원안은 공제요건 중 ①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비율 하한을 40%에서 30%로 완화함과 동시에 ② 운송비용 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해상운송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물동량 비율이 30%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전년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비율 증가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현행 공제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40% 이상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만큼 기본공제를 적용하되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원양 해상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만큼을 추가적으로 공제

하려는 것임.

- 공제요건을 완화 또는 변경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현행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비율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운송비용 최소 충족치 40%를 상회하는 우수화주는 6개사에 불과하고, 국적선사 선복량 점유율이 낮은 미주·유럽 등 원양항로⁵⁵⁾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화주기업의 경우 화주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국적선사 이용률 40%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운송비용 비율 요건 완화 또는 물동량 기준 전환 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화주기업의 비용 절감 및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1년에는 1개 기업, 2022년에는 3개 기업, 2023년에는 6개 기업이 동 조세특례에 따른 공제혜택을 적용받았음.

둘째, 정부안은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낮추는 대신 원양노선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연근해노선에 비해 회복이 더딘 원양노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적선사의 선복량 점유율이 6%

55) 2024년 기준 국적선사 선복량 점유율 : 극동亞-유럽 5.5%, 극동亞-북미 3.8%

수준이었으나, 한진해운 파산 이후 회복이 늦어 2025년 3월 기준 3.2%에 불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원양항로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셋째, 현행 공제요건에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현행법상 조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하므로 화주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이용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공제요건 충족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당 공제요건은 국내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장려하여 국적선사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현행 공제요건이 특정연도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낮춘 후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등 제도의 악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제요건을 물동량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공제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물동량 기준 자국적취율이 비용 기준 자국적취율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음⁵⁶⁾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화주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둘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요건은 국적선사 이용률을 제고하여 국내 선·화주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할 경우 동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

참고로 2020년 말 일몰이 도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을 공제요건으로 규정한 바 있음.⁵⁷⁾

셋째, 정부안은 원양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의 국적선사 이용비율이 25% 이상

56) 적취율(% , '24년): 물동량 기준 38.8%, 비용 기준 16.8%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 경우 해당 지출액의 1%를 공제하려는 것인데, 「해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원양”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해양수산부는 지리적 위치 등을 기준으로 연근해 항로를 구분하고 그 외 항로를 원양항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 개정 시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외항선사 연근해 항로 현황]

연번	국가	영문
1	대만	Taiwan Province of China
2	동티모르	Timor Leste
3	말레이시아	Malaysia
4	미얀마	Myanmar
5	방글라데시	Bangladesh
6	베트남	Viet nam
7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8	싱가포르	Singapore
9	인도네시아	Indonesia
10	일본	Japan
11	중국	China
12	캄보디아	Cambodia
13	태국	Thailand
14	필리핀	Philippines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54

10.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12789, 12819),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제5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제5호: <u>2025년 12월 31일</u> - 제6호: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김영진·이원택·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이만희·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서삼석·유상범·임호선·정희용의원안)</u> · <u>2035년 12월 31일(문대림의원안)</u> - 제6호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김영진·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서삼석·유상범·임호선·정희용의원안)</u>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추징(제105조제2항) ○ 적용대상 - <u>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u> ○ 추징액 - 그 <u>축산업용 기자재</u>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시 추징사유 확대 ○ 적용대상 - <u>농민·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u> - <u>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정부안)</u> ○ 추징액 - 그 <u>기자재</u>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면제(제106조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제9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병진·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유상범·임호선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김선교·신영대의원안) - 2026년 1월 1일(엄태영·김영진·문대림·이원택·서천호·이만희·서삼석·이병진·송옥주·추경호·최은석·유상범·임호선·윤영석·서영교·정희용의원안, 정부안) ○ 적용례: 가산세 추징(제10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

현 행	개 정 안
	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정부안)

* 임태영의원안 2025. 3. 4. 발의(의안번호 8635),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김영진의원안 2025. 3. 11. 발의(의안번호 8790), 문대림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912), 이원택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18),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이만희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105),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0),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신영대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84),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윤영석의원안 2025. 9. 3. 발의(의안번호 12676),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정희용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가.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이하 “농어업용 기자재 등” 이라 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⁵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6년 감면세액은 2조 2,602억원으로 전망됨.

58)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비료, 농약,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등임.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6년 감면 세액은 20억원으로 전망됨.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영 세 율	18,481	21,886	23,047	22,266	21,916	22,602
수입면세	34	46	24	23	19	20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4%,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3% 수준으로 집계됨.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어업용 (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

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2022년	46,153	63.6	52,911	72.9	72,548
2023년	50,828	67.5	54,779	72.7	75,344
2024년	50,597	66.8	63,652	84.1	75,727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⁵⁹⁾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59)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어가는 4만 1천 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9만 8천 가구로 전년 대비 농가(-2.5%), 어가(-2.1%), 임가(-1.2%) 모두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 임가 56.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⁶⁰⁾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60)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료와 사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문제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소규모·영세 농어민은 기자재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아 대규모 농어민과 소규모 농어민 간의 세제 혜택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2년에서 10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2조 6,933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9,888억원(연평균 2조 9,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또한,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58억원(연평균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세율	-26,933	-28,374	-29,894	-31,498	-33,190	-149,888	-29,978
수입면세	-36	-21	-34	-46	-24	-29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시 추징사유 확대

□ 개정안은 기존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농민⁶¹⁾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 제105조의2⁶²⁾에서 농어민이 아닌 자가 모든 기자재에 대해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한정해 추징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임.⁶³⁾

6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따르면,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됨.

6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63)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환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영세율 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지만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비 농림어업부문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와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를 비교해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는 비료, 농약, 사료, 동력경운기 등 주로 농림어업에만 사용되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는 농업·임업용 필름, 농업·임업용 파이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자재가 많았기 때문에 부정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음.⁶⁴⁾

그러나, 영세율 기자재의 종류⁶⁵⁾가 다양하고 타용도 전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기자재 또한 타용도 전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추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와 사후환급 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분	제도의 우열
제도 혜택의 귀착	환급 방식 우위
납세협력비용, 환급대행수수료 등	영세율 방식 우위
세원수출 및 관리	환급 방식 우위
부정수급 방지	환급 방식 우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p.91

아울러,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기자재를 재판매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함.('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p192)

64)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정사용, 어민이 아닌 자의 어업용 기자재 부정사용 현황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곤란함.

65) 2002년 처음 도입 당시 영세율 적용 기자재는 153개였고, 2006년 이후 130개 내외로 유지되었던 기자재는 2017년 유기농어업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177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 농업용 기자재 범위를 조정하면서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175개임.

함으로써,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선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7

1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1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간접세 면제(제111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이병진·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서영교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비용을 경감하고 도서지방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에 마련된 것으로, 규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1998년 말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2003년 말까지 처음 적용기한을 설정하였고,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최근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된 석유량과 조세감면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3,132kl, 2023년에는 3,695kl, 2024년에는 3,794kl의 석유류가 자가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각각 15억 4,000만원, 17억 3,700만원, 18억 6,400만원임.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액 현황]

(단위 : kl, 백만원)

연도별	유종	공급물량	조세감면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계
2022년	경유	3,130	745	112	194	488	1,539
	휘발유	2	0.6	0.1	0.2	0.3	1.2
	계	3,132	746	112	194	488	1,540
2023년	경유	3,692	879	132	228	495	1,734
	휘발유	3	1.2	0.2	0.3	0.4	2.1
	계	3,695	880	132	229	496	1,737
2024년	경유	3,791	970	146	252	494	1,862
	휘발유	3	1.1	0.2	0.3	0.1	1.9
	계	3,794	971	146	253	494	1,864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세유 공급대상 도서지방은 2024년 기준 총 31개 지역임.

[2024년도 지역별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공급 현황]

지역	자가발전 도서지역 수	자가발전 도서지역명
경남	5	지심도, 와도, 국도, 수도, 소매물도
인천	3	지도, 굴업도, 백아도
전남	18	하태도, 장도, 만재도, 상태도, 우이도, 금죽도, 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모항도, 소늬도, 대늬도, 맹골도, 서거차도, 외병도, 광대도, 가사도, 삼마도
전북	2	관리도, 방축도
제주	2	추포도, 횡간도
충남	1	죽도
계	31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육지에 비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도서지방의 생활 여건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지방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⁶⁶⁾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류에 대

6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

한 면세가 중단될 경우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의 추가 지원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도서지방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세유 제도의 중단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외에도 도서지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면세유 혜택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운영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전력망이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미 일반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면세유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자가발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부가가치세	-5	-5	-5	-5	-5	-25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11	-11	-55	-11
교육세	-1	-1	-1	-1	-1	-5	-1
합계	-17	17-	-17	-17	-17	-85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각각 2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

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적용
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
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주체

- 회원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공급 받은 석유류를 도서지역에 직접 공급

□ 자가발전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주체이며, 면세유 공급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자가발전 석유류 관련 수협의 역할

- 중 앙 회 : 회원조합으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에 공급물량 신청, 회원조합에 면세유류 배정
- 회원조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관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에 면세유 직접 공급

□ 자가발전된 전기를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

순서	업무 내용	세부 업무 절차	비 고
①	공급요청	지자체는 관할 도서의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수협(회원조합)에 면세유 공급요청	
②	유류카드 발급	수협은 공급 검토 후,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유류카드를 발급	
③	면세유 공급	수협은 지자체의 면세유 신청에 따라 연간 소요량 이내에서 출고지시서를 발급 지자체는 출고지시서를 근거로 수협급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음	
④	대금정산	수협은 면세유 공급증서를 근거로 지자체에 면세유 공급 대금 신청 및 정산	

12.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직영 구내식당에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2호가목) -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 동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 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 식용역(제2호나목) -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직영 구내식당에 공급 하는 음식용역(제2호다목) -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 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2호라목)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31년 12월 31일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 개정안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⁶⁷⁾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근로자와 학생의 세부담

6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
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
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을 경감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동 제도는 1983년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장 및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 마련하였음.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⁶⁸⁾이 면세 대상에 추가되었고, 이후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⁶⁹⁾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68)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함.

첫째, 사업장 구내식당의 경우,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이나 버스 차고지는 대부분 주변 상권이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버스 운전기사가 식사의 대부분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학교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2024년 학교급별 급식현황]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6,201	6,201	100	2,513,617	2,513,416	99.9	6,185 (99.7)	16 (0.3)
중 학교	3,273	3,273	100	1,336,211	1,336,175	99.9	3,248 (99.2)	25 (0.8)
고등학교	2,377	2,377	100	1,297,703	1,297,365	99.9	2,160 (90.9)	217 (9.1)
특수학교	196	196	100	29,450	29,324	99.6	194 (99.0)	2 (1.0)
합계	12,047	12,047	100	5,176,981	5,176,280	99.9	11,787 (97.8)	260 (2.2)

자료: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 현황

특히, 2021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2024년 학교급식 부담 주체별 현황]

구분	교육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지원금	보호자 부담금	발전기금 /기타	계
금액	5조 9,138억원	1조 6,971억원	2,040억원	4,483억원	8조 2,633억원
비중	71.6%	20.5%	2.5%	5.4%	100%

자료: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 현황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에 도래하므로,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몰 설정 후 주기적으로 성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임.

따라서, 동 특례는 일몰이 도래하는 2026년에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타당성·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조세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이러한 절감효과가 근로자와 학생들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급식의 질이나 양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1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제3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31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 가축질병, FTA 확대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⁷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어업의

7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음.

특례규정 신설 당시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적용기한을 정하였으나, 이후 8차례에 걸쳐 2~3년씩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⁷¹⁾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을 의뢰한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도·농간 소득격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농·어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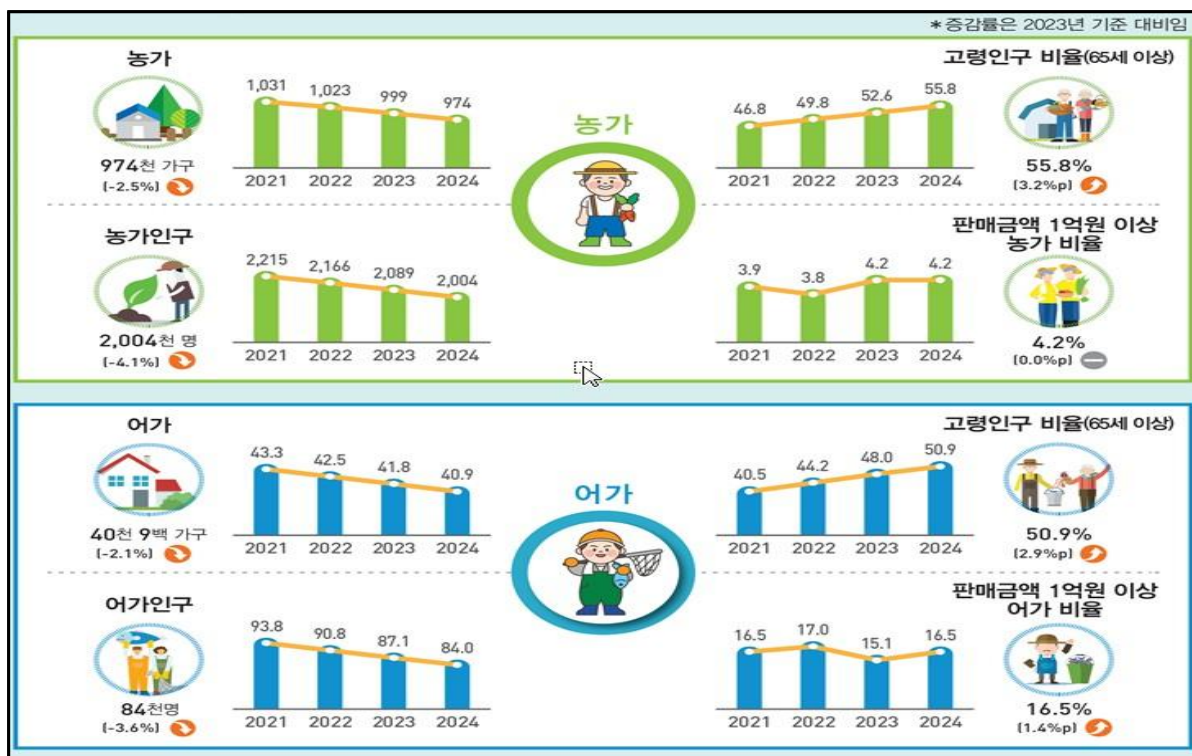
71)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함.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2022년	46,153	63.6	52,911	72.9	72,548
2023년	50,828	67.5	54,779	72.7	75,344
2024년	50,597	66.8	63,652	84.1	75,727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자료: 2024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25. 4. 17. 발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어가는 4만 1천 가구(내수면 제외)로 전년 대비 농가(-2.5%), 어가(-2.1%) 모두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로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7년 3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90억원(연평균 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국세 (74.7%)	-28	-28	-28	-28	-28	-142	-28
지방소비세 (25.3%)	-10	-10	-10	-10	-10	-48	-10
합계	-38	-38	-38	-38	-38	-190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14.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비수도권 읍·면 소재의 공동주택 또는 그 외 지역의 주거전용면적 85㎡초과 135㎡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제4호의2)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관리주체⁷²⁾, 경비업자⁷³⁾ 또는 청소업자⁷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⁷⁵⁾이 아닌 공동주택 중 ①비수도권 읍·면 지

7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

73)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7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자

75) 「주택법」에 따라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85㎡,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을 말함.

역 소재의 공동주택과 ②그 외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의 공동주택임.

참고로,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의3⁷⁶⁾에 따라 적용기한 없이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구 면제되고 있음.

[공동주택별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현황]

면 적 \ 지 역	수 도 권	비 수 도 권	
		도 시	읍 · 면
85㎡ 이하	영구면세 (국민주택)	영구면세 (국민주택)	영구면세 (국민주택)
85㎡ 초과 100㎡ 이하	한시면세	한시면세	영구면세 (국민주택)
100㎡ 초과 135㎡ 이하	한시면세	한시면세	한시면세
135㎡ 초과	과 세	과 세	한시면세

□ 동 제도의 목적은 중규모 또는 읍·면 지역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관리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초 과세되지 않았으나, 1998년 감사원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누락 사실을 지적하는 감사가 진행되었음.

이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01년부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01년 5월 이후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면세대상이 확대되어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차례로 추가되었음.

한편,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통상 약 32~33평형)⁷⁷⁾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1년 5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조의3에 의해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적용기한 없이 면제되고 있음.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조의2⁷⁸⁾에 따른 국민주택

77)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

7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적용되어 왔음.

그리고, 읍·면을 제외한 지역의 135㎡(통상 47~49평형)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4년에 종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1998년	○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위탁관리회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누락사실이 지적됨.
2001년 1월	○ 국세청은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함
2001년 5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3년 말까지 면제
2002년 8월	○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3년 말까지 면제
2003년 12월	○ 관리용역은 2004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04년 7월	○ 2004년 1월부터 정상 과세하던 경비용역 다시 면제
2004년 12월	○ 관리·경비용역에 대해 2005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05년 12월	○ 관리·경비용역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08년 12월	○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2011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11년 12월	○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2014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14년 12월	○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일몰 연장 ○ 읍·면이 아닌 지역의 135㎡ 초과 주택에 대한 면제 종료
2017년 12월	○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20년 12월	○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일몰 연장
2022년 12월	○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일몰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읍·면지역 및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첫째,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특례의 연장을 통해 국민의 관리비 인상부담을 방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은 공동주택 면적에 따라 면세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의 대형 공동주택(전용면적 100㎡ 초과)의 가격이 도심지역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가격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15년부터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만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인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지역의 전용면적 85㎡ ~ 135㎡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에게 면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둘째,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등의 공급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영구 면세된다는 점에서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1,70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483억원(연평균 1,8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1,277	-1,343	-1,413	-1,487	-1,565	-7,084	-1,417
지방소비세 (25.3%)	-432	-455	-479	-504	-530	-2,399	-480
합계	-1,709	-1,798	-1,891	-1,990	-2,095	-9,483	-1,8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15.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박용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u>난방용역</u> (제4호의5)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추가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u>난방용역 및 난방연료(박용갑 의원안)</u> ☐ 적용기한 연장 - <u>2031년 12월 31일(윤준병 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공포 후 6개월(박용갑의원안)

* 박용갑의원안 2025. 2. 21. 발의(의안번호 8353),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윤준병 의원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난방용역에 더하여 난방연료도 추가하려는 것임(박용갑 의원안).

☐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함⁷⁹⁾.

79) 보증금과 임대료가 보통 시세의 30% 수준에서 결정됨.

영구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함.

[2024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

호수	144,691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26㎡~40㎡ 이하
건설재원	(출자) 85%, (입주자) 2.5%, (사업자) 12.5%
입주자격	(우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일반)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이하, 임대무기간 50년

주: 2024년 말 LH 임대주택(주택관리공단)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단열관을 통해 인근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중앙난방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대형 보일러로 직접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방식임.⁸⁰⁾

한편, 지역난방의 경우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접 난방연료와 난방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⁸¹⁾이므로 난방

80) 「국토교통부 답변자료」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거지역 등에 집단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난방방식

(중앙난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중앙집중난방방식 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개별난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별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용역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⁸²⁾이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난방연료(도시가스 등)를 과세로 공급받아 자체 난방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개별난방의 경우에도 각 세대가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고 연료(도시가스, LPG 등)를 직접 구매하여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난방 용역이라기보다는 난방연료 구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영구임대주택의 난방 공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난방방식 → 비과세
- 소비자는 난방용 열(온수) 구매 → **용역(열) 공급에 면세 중**
- **(개별난방)** 도시·액화석유가스를 통해 개별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 과세
- 소비자는 난방용 가스 구매 → **재화(가스) 공급에 과세 중 → 면세요구**
-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중앙집중난방방식 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 과세
- 소비자는 난방용 가스 구매 → **재화(가스) 공급에 과세 중 → 면세요구**

자료: 기획재정부

□ 이와 같이,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어,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

81)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병합발전소나 폐열 회수 시설에서 생산한 열을 대규모 배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하며, 이 열공급은 난방용역(열공급 서비스) 형태로 제공됨. 따라서, 소비자는 난방연료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난방용역에는 열 생산에 사용된 난방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82) 주택관리공단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의 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임.

호 가운데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었고,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⁸³⁾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호, 백만원)

구분	영구임대주택 총세대수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금액					
		세대수	세대 비율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경기	20,334	17,554	86.3%	412	404	417	522	399	2,154
서울	24,086	15,430	64.1%	373	363	363	444	412	1,955
인천	6,262	6,262	100%	140	143	147	181	182	793
대구	12,480	6,558	52.6%	118	119	121	149	61	569
전북	9,330	1,694	18.2%	32	36	35	40	46	189
부산	15,571	0	0%	0	0	0	0	0	0
광주	10,407	0	0%	0	0	0	0	0	0
대전	9,170	0	0%	0	0	0	0	0	0
울산	2,362	0	0%	0	0	0	0	0	0
강원	4,914	0	0%	0	0	0	0	0	0
충북	6,258	0	0%	0	0	0	0	0	0
충남	4,971	0	0%	0	0	0	0	0	0
전남	5,101	0	0%	0	0	0	0	0	0
경북	7,812	0	0%	0	0	0	0	0	0
경남	4,537	0	0%	0	0	0	0	0	0
제주	1,096	0	0%	0	0	0	0	0	0
계	144,691	47,498	32.8%	1,074	1,066	1,083	1,337	1,099	5,969

자료: 국토교통부

□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난방용

83) 데일리중앙, ‘영구임대주택 67.1%,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전혀 못 받아’, 2025.2.23.

역에 더하여 난방연료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관련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방용역에 추가하여 난방연료에 대해서도 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주택(a)	97,193	97,193	97,193	97,193	97,193
전체 주택(b)	144,691	144,691	144,691	144,691	144,691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주택의 비율(c=a/b)	67.2	67.2	67.2	67.2	67.2

주1: 전체 주택은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유형을 모두 포함

주2: 종전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 관리호수 변경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난방연료를 공급받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유형의 주택 수는 연간 9.7만호로 전체 주택(14.5만호)의 67.2%를 차지함에 따라, 난방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이 해당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임.⁸⁴⁾

84)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받는 유형('지역난방')의 주택의 경우, 이미 난방용역비에 대한

또한, 2021~2024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중앙난방 유형의 주택 수는 연간 8.3만호이고, 이들 주택의 1호당 평균 난방연료비 공급가액은 22.1만원 수준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중앙난방 유형)의 난방연료비]

(단위: 호, 백만원, 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주택 수(a)	83,143	83,143	83,143	83,143	83,143
난방연료비 공급가액(b)	16,151	17,945	20,918	18,396	18,353
주택 1호당 공급가액(c=a/b)	19.4	21.6	25.2	22.1	22.1

주: 동 자료는 영구임대주택 중 중앙난방 유형 주택의 자료임. 개별난방 방식 세대는 14,050호(97,193호 중 중앙난방 83,143호 제외)로 난방연료비가 발생하나,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난방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난방연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난방연료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어떤 연료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구체화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가스, LPG, 등유, 전기,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난방연료 중 면세 대상이 되는 연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난방연료의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연료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 등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제외함.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⁵⁾

특히, 개별난방의 경우 각 세대가 난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설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난방방식과 보일러 종류에 따라 난방연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⁸⁶⁾

둘째, 난방용역과 달리 개별난방과 같이 개인이 구매하는 난방연료를 면세대상으로 할 경우 각 가정의 난방연료 사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불법·부정 유통 경로를 통해 난방연료를 공급하거나 법적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용 연료의 면세 혜택이 악용되어 세금 회피가 이루어져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소외계층의 지원목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바우처)을 지원하고 있어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로 한정하여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과 소득기준으로 설정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

85) 같은 법 제106조제1항 각호를 보면 석유류(제1호), 음식용역(제2호), 농어업 경영 대행용역 등(제3호), 주택 건설용역 등(제4호) 등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86)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열 생산 시설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세대가 연료를 변경할 수 없고, 중앙난방은 아파트 또는 건물 단위에서 주택관리공단(실무상 관리사무소)이 운영하는 보일러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난방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세대의 연료 선택이 제한됨. 그러나, 개별난방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난방을 운영하므로 난방방식(온수난방, 복사난방 등)과 보일러 종류(가스·기름·전기·펠릿보일러 등)에 따라 도시가스, LPG, 등유, 전기,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난방연료 선택이 가능함.

임.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2025년 예산
하절기바우처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여름철 냉방이용을 위한 전기요금을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형태로 지원	69,271
동절기바우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 구입 비용을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지원	410,398
연탄쿠폰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타 소외계층	연탄 구입 비용을 쿠폰 형태로 지원	19,824

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세부사업(5146-301)

자료: 기획재정부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은 2026년에 일몰 예정이므로, 일몰이 도래하는 2026년에 심층 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타당성·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조세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7년 2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1억원(연평균 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연료비⁸⁷⁾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총 3.6억원(연평균 1.8억

87) 코크스 및 관련제품,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원유 등 석유정제물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국세 (74.7%)	-2	-2	-2	-2	-2	-8	-2
지방소비세 (25.3%)	-1	-1	-1	-1	-1	-3	-1
합계	-2	-2	-2	-2	-2	-11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16.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제5호) - (할당)배출권: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추경호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83),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배출권⁸⁸⁾과 상쇄배출권⁸⁹⁾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

8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8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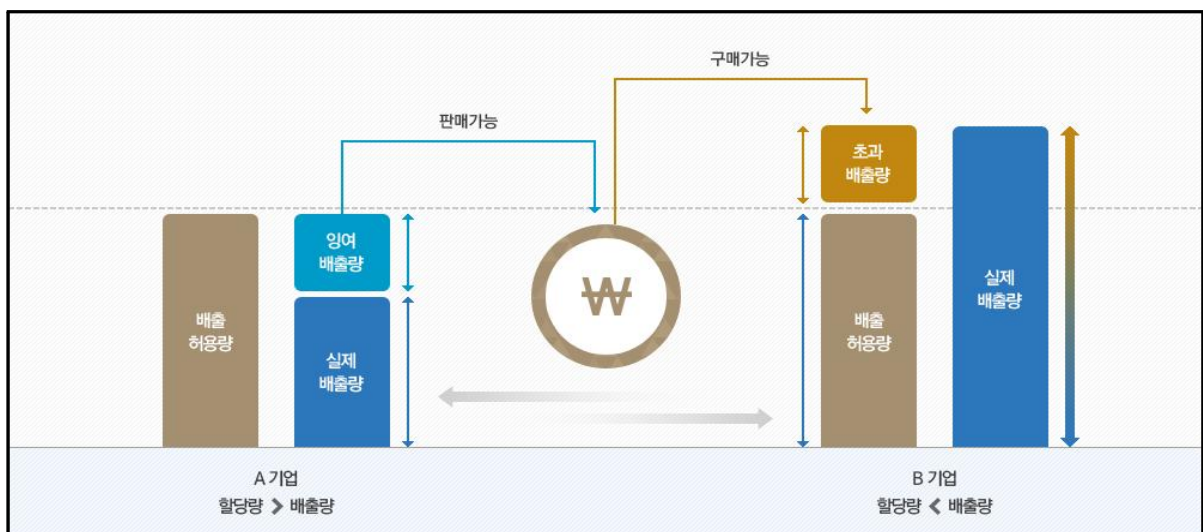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한 유형으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며,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개시되었고,⁹⁰⁾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3차례 연장되었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념]



주: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90)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 낮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 높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함.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 효과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시킨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⁹¹⁾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566만톤이던 배출권 거래량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0배인 1억 1,124만톤으로 증가한 바 있음.⁹²⁾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은 2020년 1조 3,385억원에서 2022년 8,7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9,688억원, 2024년 1조 641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⁹³⁾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래금액	5,503	10,509	10,831	13,385	12,666	8,756	9,688	10,641
전년대비 증감률	169.6	91.0	3.1	23.6	-5.4	-30.9	10.6	9.8

자료: 환경부

91)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발행하므로 배출 상한은 국가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있음.

92) 환경부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도입 10주년… 시장원리로 온실가스 감축 이끌었다’, 2025.1.22.

93)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누적된 과잉할당·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전 대비 하락한 상황임(관계부처 합동,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2023.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및 평균가격 추이: 2017~2024년]

(단위: 만톤, 원/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래량	2,626	4,751	3,808	4,401	5,472	3,914	8,994	11,124
평균가격	21,131	22,237	29,126	29,026	19,709	20,633	9,987	9,245

주: 거래량은 장내외 거래 합산(KAU, KCU, KOC 종합)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장내에서 거래된 KAU 기준(거래대금/거래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정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음.⁹⁴⁾

[온실가스 배출권 지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지정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의무 할당업체, 자발적 참여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지정요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지정기준 이상인 업체
지정기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267억원, 2022년 876억원, 2023년 965억원, 2024년 1,061억원이고, 2025년에는 480억원, 2026년에는 495억원으로 전망되어 감소추세에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1,267	876	965	1,061	480	495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9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개정안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고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정의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특징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시 활용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시 활용 (단, 전체 제출량의 10% 한도 내)
거래장소	장내/장외	장내/장외
거래주체	할당대상업체,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수출입은행 (정부 보유 예비분 위탁매매기관)	할당대상업체
부가세	국가 · 지자체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제	국가 · 지자체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상쇄배출권 활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다른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면세제도가 연장되면 해당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이 거래를 더 활발히 진행하게 되고, 배출권의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또한, 기업들이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면세제도가 적용되면 상쇄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어, 감축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⁹⁵⁾

둘째,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 및 상쇄배출권 활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나 상쇄배출권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없애고, 거래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영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기업들이 더 많은 자원을 배출권 거래나 감축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임.

또한, 세금 문제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던 기업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기업들이 계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하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 할당대상업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없고, 단지 부가가치세 환급시까지 기업의 자금 흐름을 일시적

95)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정책 수단이 시장참여자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정도의 유의미한 거래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거래형태 및 거래 상품의 안착으로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정착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동 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으로 호전시키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임.

그러나 향후 배출권 거래시장이 커질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시까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약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배출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⁹⁶⁾를 감안할 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정한 세제상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면제 대상 재화·용역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관련 재화·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계속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 경우에 정상 과세 전환 원칙을 갖고 면제 범위를 조정해 온 바, 예를 들어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과거에는 교육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국민 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또한 필수재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1년 이후 과세로 전환된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

둘째,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생산설비투자 및 온실

96)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하여 프랑스·스위스·호주·독일이 면세를, 영국·뉴질랜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가스 저감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음.

[비용절감으로 발생한 추가 생산설비투자 및 저감투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추가 생산설비 투자		추가 온실가스 저감투자	
		기업수	투자여부	기업수	투자여부
기관 분류	건물	1	100.0	4	25.0
	산업	53	9.4	32	25.0
	수송	1	0.0	1	100.0
	전환	8	37.5	9	33.3
	폐기물	2	50.0	1	0.0
권역	서울	11	9.1	8	25.0
	경기/인천	13	15.4	10	30.0
	대전/충청/세종	10	10.0	9	0.0
	광주/전라	7	14.3	2	0.0
	대구/경북	7	0.0	5	0.0
	부산/울산/경남	13	38.5	9	88.9
	강원/제주	4	0.0	4	0.0
총계		65	15.4	47	27.7

주: 전체 사례 수 대비 생산설비 및 저감 투자 비율

자료: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 재구성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1,27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7,781억원(연평균 1,5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955	-1,049	-1,152	-1,266	-1,390	-5,813	-1,163
지방소비세 (25.3%)	-324	-355	-390	-429	-471	-1,969	-394
합계	-1,279	-1,404	-1,543	-1,694	-1,861	-7,781	-1,5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개념)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 (대상)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할당)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
(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 (거래)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11,124만톤('24), (거래가격) 9천원/톤 수준 유지 중

○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8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 (정산)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17. 전기 및 수소 이용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제9호의2)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추경호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83),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 시내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의 목적은 버스운송회사가 친환경적인 전기 시내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버스의 비중을 높이려는데 있음.

또한, 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

를 개선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면세규정은 2012년부터, 수소버스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은 2019년부터 각각 시행되었음.

참고로, “전기자동차”⁹⁷⁾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며, “수소전기자동차”⁹⁸⁾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유해물질이나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임.

[전기·수소 상용차 보급 현황]

(단위: 대)

구 분	보급실적					누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전기차	238,063	164,486	162,605	146,902	93,549	805,605
승 합	3,146	2,074	2,820	3,611	1,179	12,830
화 물	43,036	38,471	43,940	20,581	12,053	158,081
수소차	19,477	10,256	4,673	3,784	1,287	39,477
승 합	131	152	368	1,044	524	2,219
화 물	5	-	5	5	-	15
청 소	-	-	6	18	2	26

주: 국토교통부 신규 등록대수 기준

자료: 환경부

9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는 약 84.5만대가 보급되었으며, 2023년 이후 다소 둔화됐던 전기·수소차 보급 수요는 2024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⁹⁹⁾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수소 버스는 수요 둔화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12,830대 가운데 국산은 59.6%, 수입산은 40.4%를 차지하고 있음.¹⁰⁰⁾

□ 한편,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도에 따른 감면세액 전망치는 2025년 2,805억원, 2026년 2,893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409	752	1,304	2,188	2,805	2,89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첫째, 최근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인 전기 시내버스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99) '25.6월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9.5만대, '24년 동기(6.6만대) 대비 약 44% 증가

100)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생산 전기상용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2025.7.24.

(전기버스) ('22) 2,074대 → ('23) 2,820대 → ('24) 3,611대 → ('25.6월) 1,179대

(수소버스) ('22) 152대 → ('23) 368대 → ('24) 1,044대 → ('25.6월) 524대

초미세먼지의 1차적 발생은 경유자동차의 배기관이나 공장의 굴뚝에서 검은 매연의 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2차 생성은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후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발생 주요 배출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유차, 건설기계 등, 비산먼지), 비산업연소, 유기용제사용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생성 비율]

(단위: 톤/년)

구분	합계	경유차	건설기계등	냉난방등	발전소	비산먼지	사업장	생물성연소	휘발유차 등	에너지수송·저장/유기용제사용
1차	15,160 (29%)	1,993 (16%)	4,033 (34%)	409 (8%)	701 (17%)	5,680 (100%)	499 (10%)	1,785 (88%)	61 (5%)	-
2차	37,952 (71%)	10,583 (84%)	7,712 (66%)	4,869 (92%)	3,324 (83%)	-	233 (12%)	233 (12%)	1,249 (95%)	5,321 (100%)

자료: 환경부, 「2023 환경백서」

또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친환경버스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둘째, 시내버스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므로 이를 면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교통비용을 낮춰줄 수 있음.

시내버스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바, 소비자 만족도¹⁰¹⁾가 높은 전기 시내버스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경우 이들의 후생 증대와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전기 시내버스 도입 초기에는 과점한 버스 공급회사 측(대부분 중국 전기버스 공급자)이 보조금을 통한 버스 가격 결정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 전기버스 공급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었음.

즉, 2020년까지는 중국 전기버스 공급자들이 전기버스 가격을 보조금 액수에 맞춰서 운송사업자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및 중국의 소수기업이 대부분의 시장 점

101) 전기버스는 연료 연소나 내연기관 구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나 소음이 적어 버스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음(2020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울시/2022년 전기버스 도입 효과분석, 수원시)

유율을 차지하였음.¹⁰²⁾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기버스 1대 구매 시 자가부담금 1억을 필수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한국 시내버스 공급 가격과 중국 시내버스 공급 가격이 비슷하여 보조금이 특정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악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¹⁰³⁾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전기 시내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부터 전기버스 구매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¹⁰⁴⁾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만 개별소비세¹⁰⁵⁾ 대상으로 전기 시내버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

102) 대표적인 중국 기업으로는 황해, 비야디, 하이거,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차, 에디슨모터스, 우진산전 등이 있음.

103) 환경부는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0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외됨.

재정정책으로는 환경부에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전기 시내버스 구매를 지원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측면에서도 전기 상용차 관련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전기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보다는 보조금 지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요국의 전기 승용차 지원제도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는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 주요국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국가	전기 승용차 기준 보조금
미국	◦ 누적판매 20만대 미만 업체만 보조금 지급 - 연방정부 최대 7,500달러(약 900만원) - 주정부 최대 3,000달러(약 380만원)
독일	◦ 4만유로 이하 전기차: 9,000유로(약 1,200만원) ◦ 4~6만유로 전기차: 7,500유로(약 1,000만원)
중국	◦ 30만위안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 주행거리 300~400km: 1만 3천위안(약 240만원) - 주행거리 400km 이상: 1만 8천위안(약 340만원)

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국가	전기 승용차 기준 보조금
일본	◦ 정부: 최대 40만엔(약 390만원) – 주행거리 km당 1천엔 ◦ 지자체: 최대 30만엔(약 290만원)
한국	◦ 정부: 최대 700만원 – 5,500만원 미만: 100% – 5,500~8,500만원: 50% ◦ 지자체: 200~1,2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데, 해외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의 10%보다 높은 20~25% 수준이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3,306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조 3,073억원(연평균 4,6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2,470	-2,883	-3,366	-3,929	-4,587	-17,235	-3,447
지방소비세 (25.3%)	-836	-976	-1,140	-1,331	-1,554	-5,837	-1,167
합계	-3,306	-3,860	-4,506	-5,260	-6,141	-23,073	-4,61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18.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제12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목재펠릿¹⁰⁶⁾이란 목재 또는 제재소(製材所) 부산물을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말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

106) 톱밥이나 미세하게 파쇄한 나무를 고온, 고압하여 단단하게 한 것이고, 직경 6~8mm, 길이 20mm 정도이고, 나무에 포함된 리그닌이 성형시 온도에 녹아서 냉각시에 단단하게 되어 접착제 등은 필요가 없고, 순수한 나무만으로 성형할 수 있다. 목재 펠릿은 목질 칩과 비교하여 수송, 보관성, 품질안정성, 착화성, 연소제어성 등에서 뛰어남.(산림청 산림임업용어사전)

에서 목재펠릿은 탄소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탄소중립 재생 에너지 자원이며, 사용의 편리성, 이동의 용이함, 저렴한 가격 등 기존 목질계 연료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¹⁰⁷⁾

[목재펠릿과 탄소중립]



자료: 산림청

□ 동 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¹⁰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7년까지 적용하였고,¹⁰⁹⁾ 2018년부터는 면제 적용 범위를 현행과 같이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어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축소하고, 이후 적용기한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107) 나무는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연료를 태울 때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IPCC 가이드라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권고함.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9)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업초기 시장형성 및 보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음.(「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3.8.)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4억원, 2024년 3억원이고, 2025년에는 3억원, 2026년에는 3억원으로 전망됨.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감면액	2	2	4	4	4	4	3	3	3

주: 2018년부터 농민·임업인 공급분에 한정함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급감함.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최근 목재펠릿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그 수요가 하락¹¹⁰⁾하고 있어 농민·임업인 지원, 화석연료 비중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목재펠릿 톤당 평균 가격]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톤당 판매가격	393	352	418	454	444

자료: 산림청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 이용 활성화’ 정책은 농·산촌 지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등유)를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으로 대체¹¹¹⁾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110) 농·임업용 이용량: (2021년) 12.6천톤 → (2022년) 11.7천톤 → (2023년) 11.0천톤 → (2024년) 8.6천톤

이는 난방용 등유와 목재펠릿은 비교적 대체가 용이¹¹²⁾하기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실내등유 가격의 상승¹¹³⁾으로 대체 연료인 목재펠릿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¹¹⁴⁾에 따르면, 등유 가격과 목재펠릿 수요는 대체관계에 있어 등유가격이 63.8% 상승하면 목재펠릿 수요물량은 4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농·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은 영세한 농민·임업인 지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연간 목재펠릿의 자급률이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임업용(농민·임업인 난방용 포함) 이용량의 경우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세 감면을 통해 증가세 회복이 필요해 보임.

[연간 목재펠릿 생산(공급)량 및 자급률]

(단위: 톤, %)

연도	합 계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자급률
2009	20,569	8,527	12,042	41.5
2010	33,981	13,088	20,893	38.5
2011	64,013	34,335	29,678	53.6
2012	173,790	51,343	122,447	29.5
2013	550,271	65,603	484,668	11.9

111)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펠릿 1kg은 등유 0.4ℓ를 대체할 수 있음.

112) 통상 등유보일러와 목재펠릿 보일러 시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료의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어 등유가격이라는 대체재의 영향은 목재펠릿의 균형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산림경제연구 제29권, 「난방용 목재펠릿 수요와 공급 전망」, 2022)

113) 실내등유 가격: ('24.11월) 1,309.76원/ℓ → ('25.2월) 1,341.41원/ℓ

114) 국립산림과학원, 「석유가격을 반영한 난방용 목재펠릿 시장분석 결과」, 2022. 7.

연도	합 계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자급률
2014	1,940,103	90,462	1,849,641	4.7
2015	1,552,821	82,137	1,470,684	5.3
2016	1,769,213	52,572	1,716,641	3.0
2017	1,773,294	67,446	1,705,848	3.8
2018	3,200,190	187,745	3,012,445	5.9
2019	2,809,845	243,287	2,566,558	8.7
2020	3,257,798	331,202	2,926,596	10.2
2021	3,836,896	658,336	3,178,560	17.2
2022	4,647,089	737,006	3,910,083	15.9
2023	4,254,088	777,405	3,476,683	18.3
2024	3,411,297	619,713	2,801,558	18.1

자료: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농민과 임업인이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등으로 구매한 이용량은 2024년 기준 3만 4,000명, 면세금액은 4억 7,500만원이고, 2025년 전망치로 수혜자는 3만 6,000명, 면세금액 4억 9,000만원¹¹⁵⁾으로 전년 대비 소폭(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수혜 실적 및 전망]

(단위: 천톤, 백만원, 천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농·임업용 이용량*	12.6	11.7	11.0	8.6	9.5
면세금액	401	432	473	475	490
수혜자 수	4.2	3.9	3.7	3.4	3.6

주: 농·임업용 이용량에는 농민·임업인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목재펠릿 양도 포함됨.

자료: 산림청

따라서, 최근 원목 가격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

115) 산림청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목재펠릿 수요 상승과 판매단가 상향 등으로 2024년도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이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금액(4억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단할 경우, 판매단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연간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생산 규모]

(단위 : 천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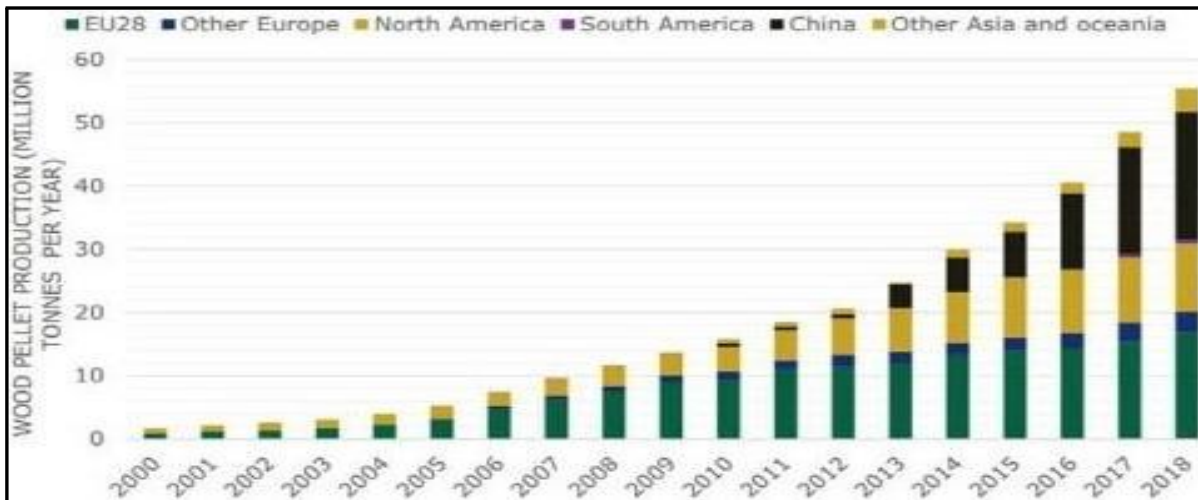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

셋째, 전 세계적으로도 목재펠릿 생산량이 증가(2007년: 1,000만톤 → 2022년 4,759만톤)하고 목재펠릿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2012 ~ 2023년까지 목재펠릿은 연평균 13.9% 성장)하고 있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목재펠릿과 같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음.

[전 세계 목재펠릿 생산량 추이]



자료: IEA Bioenergy Europe 보고서

따라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는 탄소중립 정책과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내시장과 국제사회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세제지원의 효과가 낮다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급 현황¹¹⁶⁾을 살펴보면, 매년 보급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이 실제로 영세

116)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후 공모 절차(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를 거쳐 주택용(농·임업용, 상업용, 주민편의)과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음. 지원규모는 '25년 기준 848백만원이며, 지원기준은 주택용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며, 사회복지용은 국비 50%, 지방비 50%임

한 농민·임업인 지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연도별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현황]

(단위: 대)

구분	계	'09~'19	'20	'21	'22	'23	'24
계	31,512	28,136	1,145	727	656	457	391
보일러	29,115	26,630	843	496	506	339	301
난로	2,397	1,506	302	231	150	118	90

자료: 산림청

이와 같이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급 현황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제 수요와 맞지 않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목재펠릿에 대한 세제지원 보다 다른 방식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 목재펠릿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외에도 농민·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

런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4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0억원 (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3	-3	-3	-3	-3	-15	-3
지방소비세 (25.3%)	-1	-1	-1	-1	-1	-5	-1
합계	-4	-4	-4	-4	-4	-20	-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1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제대상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이병진·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서영교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여객선, 도선 등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¹¹⁷⁾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¹¹⁸⁾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117)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8) 조합원(여객운송사업자 등)이 해운조합에 면세유 공급을 주문하면 해운조합이 정유사와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치세 등 간접세 면제¹¹⁹⁾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의 목적은 도서지방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안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항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연안 여객운송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안여객 운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도서지방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음.

유인섬 현황 조사가 시작된 2015년에는 유인섬이 472개로 조사되었고, 이후 2020년까지 유인섬의 수는 464개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유인섬의 수는 다시 467개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의 유인섬은 473개¹²⁰⁾, 무인도서는 2,918개로 조사됨.

한편, 유인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6년에 86만 3,17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81만 4,536명으로 집계되었음.¹²¹⁾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¹²²⁾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20) 473개 유인섬 중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의 수는 372개로 전체 유인섬의 78.6%를 차지함.

121) 「2024년 유인섬 현황조사로 본 우리나라 유인섬의 현황」, 김재호, 2024

12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동 특례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석유류세 면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75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면제되는 세목이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현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제도의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액은 2023년 381억원, 2024년 392억원이고, 2025년에는 397억원, 2026년에는 406억원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부가가치세	190	150	143	132	136
개별소비세	9	9	8	7	7
교통·에너지·환경세	224	192	209	223	228
교육세	35	30	32	35	35
소 계	458	381	392	397	406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유는 8만 2,000kl, 중유는 4만 6,000kl로 나타났음.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 천㎥,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2.0
중유	50	55	55	54	46	-1.9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 이동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인바, 동 제도는 연안여객선의 운임 인상을 억제하고 연안여객선 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¹²³⁾하여 해상교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¹²⁴⁾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항로는 2024년 말 기준 총 101개 항로로 74개 일반항로와 27개 보조항로¹²⁵⁾가 있으며, 129척의 일반항로 연안여객선과 27척의 보조항로 연안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음.

123)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비용 중 유류비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유류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또한 유류비 지급은 유류 공급업체에게 즉시 이루어지다 보니 유가 상승 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악화가 발생하고 있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여객 운임 제도 조사 보고서, 2023)

12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부재시 대다수 연안여객선 사업자가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편적 지원이 가능한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하고, 매출원가나 운임 매출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므로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으로 운항원가 절감효과를 클 것으로 평가함.

125) 섬주민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사업 채산성이 낮은 취항 기피 항로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며, 보조항로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며 선정업체는 3년 동안 계약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등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임.

[우리나라 연안여객 항로 개요]

(단위: 개)

구분	항로수			척수			업체수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101	74	27	156	129	27	66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둘째, 정부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이 여객선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낙도 보조항로로 지정¹²⁶⁾하여 운항결손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면세유 혜택이 중단될 경우 그만큼 운임 및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세수 증대의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음.¹²⁷⁾

[보조항로 지정 현황]

구분	항로	선사명	선박명	기항지
1일 생활권 항로	백령-인천	고려고속 훼리(주)	코리아 프린세스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장봉-삼목	세종 해운(주)	세종9	신도, 장봉도
	여수-거문	그린 윈드쉽핑	웨스트그린	거문도, 초도, 손죽도, 나로도
	가거-목포	(주)남해고속	뉴퀸	가거도, 만재도

126)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 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7)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적용을 받음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를 특정하여 추가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어,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와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고 운항결손액 산정 시 유류비도 비용으로 포함하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와 중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음.

구분	항로	선사명	선박명	기항지
연속 적자 항로	대부-이작	(유)대부 해운	대부고속 페리3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천-덕적	고령고속 훼리(주)	코리아익스프레 스카훼리	덕적도
	여수-함구미	(주)신아해운	한려페리9	제도, 개도, 자봉, 송고, 함구미
	통영-용초	한산농협	한산농협 카페리2	한산도, 용초, 호두, 죽도, 좌도, 비산, 화도
	통영-당금	(주)한솔해운	한솔2, 한솔3	한산도, 비진내항, 비진외항, 소매물도, 대항, 당금
	통영-욕지	(주)대일해운	가자바다로, 욕지호	연화도, 우도, 욕지도
	흑산-가거	(주)남해고속	핑크돌핀	흑산도, 태도, 가거도
	목포-외달	(유)신진 해운	슬로아일랜드	달리도, 장좌도, 울도, 외달도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경유 기반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환경 유해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인 재정 운영임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자원배

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 567억원 등 2026~2031년 6년간 총 3,339억원(연평균 5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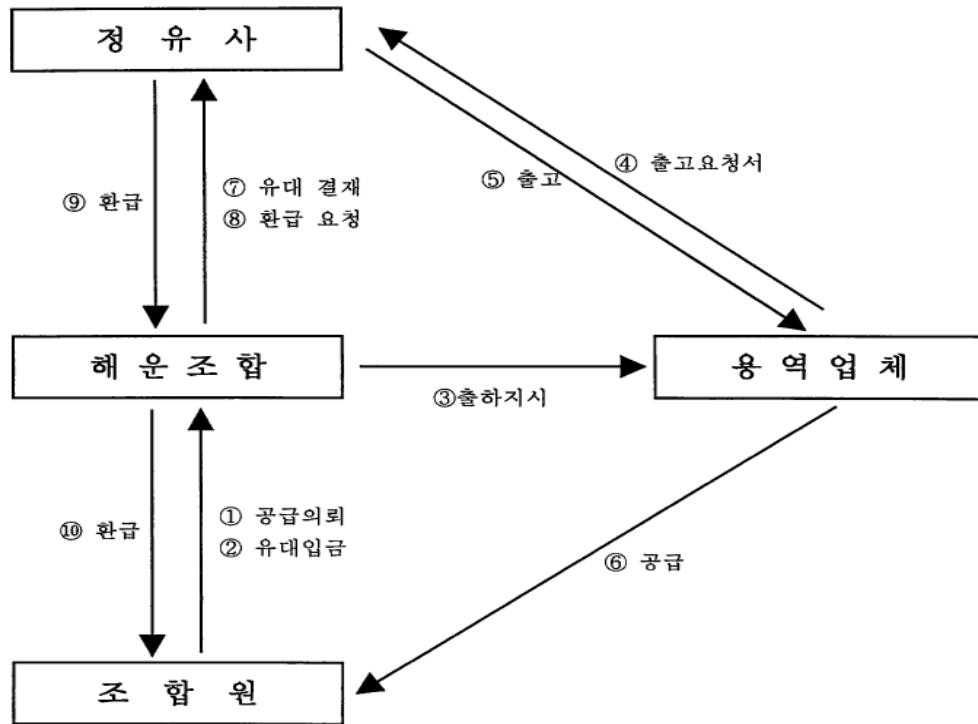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318	-354	-361	-368	-375	-31	-1,806	-301
개별소비세		-6	-6	-6	-6	-6	0	-30	-5
교육세		-49	-54	-55	-56	-57	-5	-275	-46
자동차세(지방세)		-83	-92	-94	-96	-97	-8	-470	-78
부가 가치 세	국세(74.7%)	-83	-112	-113	-114	-115	-29	-566	-94
	지방소비세 (25.3%)	-28	-38	-38	-39	-39	-10	-192	-32
전체		-567	-655	-666	-678	-690	-83	-3,339	-5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 면세석유류 공급 흐름도 〉



- ① 조합원 공급의뢰 및 공급확정
- ② 유대결제(환급세액 포함/ 부가세미포함)
- 조합->선사 계산서 발행
- ③ 용역업체에 출하지시
- 조합 출하요청서 발행
- ④ 정유사에 출하요청서 제시
- ⑤ 정유사 출고
- ⑥ 조합원 공급의뢰 선박에 공급
- ⑦ 조합 구입 유대 결제
- 정유사->조합 계산서 발행
- ⑧ 조합->정유사에 세액 환급 신청
- ⑨ 정유사->조합에 세액 환급
- 정유사->조합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 ⑩ 조합->선사에 세액 환급
- 조합->선사에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0.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제111조의5제1항) ○ 감면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 감면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에 따라 경유 375원/ℓ × 0.15 = 56원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이병진·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서영교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인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연안화물선박”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¹²⁸⁾에 사

¹²⁸⁾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용되는 선박으로 정해진 항로 없이 화주의 의뢰를 받아 국내항에서 국내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함.

- 동 특례제도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경유선박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연안화물선박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2월 일몰될 예정임.

이는 경유와 중유가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배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2020년 이전 기준에 따르면 경유는 황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하고, 중유는 2~3.5% 이하여야 했음.

[선박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강화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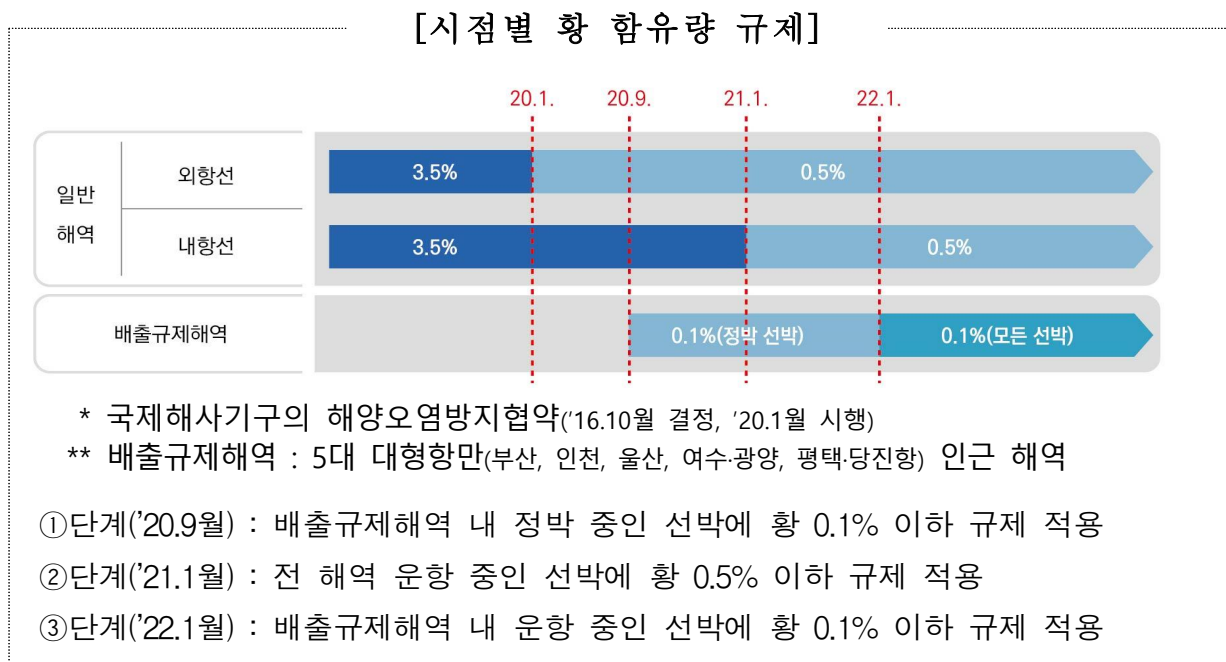
선박연료유		2020년 1월 1일 이전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		1.0%	0.5%
중유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1.0%	0.1%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함¹²⁹⁾에 따라 정부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경유와 중유 모두 0.5%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¹³⁰⁾하였으며, 특히 배출규제해역을 주로 항해하는 연안화물선은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 사용 의무가 부과됨.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2년 4만 7,471kl, 2023년 5만 1,017kl,

129)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2016년 10월 결정, 2020년 1월 시행)

1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024년 5만 2,573kl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 현황]

(단위 : kl)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공급량	47,741	51,074	52,573	5.2%

자료: 한국해운조합

또한,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2023년 32억원, 2024년 33억원이고, 2025년에는 33억원, 2026년에는 34억원으로 전망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26	28	29	29	30
교육세	4	4	4	4	4
소 계	30	32	33	33	34

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가 교육세로 부과됨.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선박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국제환경규제 및 탄소중립정책 이행을 위해 유류세 감면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연안화물선 1,955척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753척(38.5%)로 아직 경유 미전환 선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므로 동 감면특례의 연장을 통해 경유로의 적극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내항화물선사는 30,512kl를 경유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2,173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연료유 전환 특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연료유 전환으로 인한 대기환경개선 효과]

구분	사용량(ℓ)	대기오염물질(kg)			
		황산화물(SO _x)	질소산화물(NO _x)	탄산가스	합계
중유	30,512,600	2,029,048	244,096	26	2,273,170
경유		25,935	73,228	23	99,186
감축량	-	2,003,113	170,868	3	2,173,984

주: 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발생량계산방법”에 따라 계산
자료: 한국해운조합

둘째,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수송하는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화물선박은 선박연료유로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데 중유 가격이 경유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유 사용량이 많았으나, 규제 강화에 따라 선주는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경유와 중유의 가격 차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감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중유와 경유 정유사 평균 판매가격 비교]

(단위: 원/ℓ)

구 분	'21년	'22년	'23년	'24.10월	'24.11월	'24.12월	'25.1월
경유(A)	1,205.5	1,606.5	1,374.5	1,244.1	1,317.3	1,355.8	1,371.8
중유(B)	688.7	1,006.5	886.3	902.3	934.9	943.1	916.8
차이(A-B)	516.8	600.0	488.2	341.8	382.4	412.7	455.0

주: 경유는 선박용 경유, 중유는 C중유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 동향(2025. 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경유 기반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환경 유해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인 재정 운영임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026년 4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259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33	-34	-36	-38	-40	-181	-36
교육세	-10	-10	-11	-11	-12	-54	-11
부가가치세	-4	-4	-5	-5	-5	-24	-5
합계	-47	-49	-52	-54	-57	-259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